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올바르게!!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운전면허 소지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필수!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보도주행금지

범칙금 3만원

인명사고 발생시 중과실사고로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충돌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시 **범칙금 13만원**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미설치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기타
범칙금 및
안전수칙

-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 야간운행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습니다. (전주시조례 20km/h 이하)
- ❖ 인도 · 차도에 무단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란?

※ PM : Personal Mobility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19의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도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 x).

☑ 개인형 이동장치 구매요령

- 안전기준 KC 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최고속도 25km/h이하
- 품질보증기간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급경사나 장애물등을 피하고 야간운행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 배터리 화재예방 준수사항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 금지